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보 도 자 료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

- ▶ 보도 일시: 2011.12.27(화) 석간,
<인터넷 12.27(화) 08:00 이후>
- ▶ 총 10 쪽

◆ 직능사업기능확충추진단 팀장 고창용 과장 이영성
◆ 자격기획팀 팀장 장덕호 과장 김성훈

☎ 02-3271-9596, 02-3271-9131

산업인력공단, 기능개편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재도약’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내년 창립 30주년(3.18)을 맞아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확충과 국가기술자격 집행업무 일부종목 비영리법인 재위탁 등 기능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우선, 올해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능이 대폭 확충하게 된다.
-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금번 사업 이관에 따라 '12.1.1일부터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12.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1899-4001로 전화를 하면 해당 공단 지부·지사 업무담당자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학습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전문가를 통해 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대기업과 사업주단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훈련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훈련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따라서, 공단은 사업주훈련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과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훈련인프라와 노하우를 접목,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경우, 정형화된 집행기능에서 탈피해, 자격의 현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 최근 산업현장 기술의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 등에 부응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설계, 출제기준, 문제출제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문제출제, 다른 검정 수탁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국가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대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국가경제발전에 직결되어 민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자격만 국가에서 집행하고, 기술변화가 급변하지 않고 성별, 연령, 계층 등에 제한 없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검정방법이 정형화된 12종목에 대해서는 자격검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검정 집행업무*를 위탁 한다.

※ 검정집행 업무 위탁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미용기능사(일반), 미용기능사(피부),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 12종목>

○ 아울러, 광산보안기사 등 관련 4개 종목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정보통신기술사 등 관련 7개 종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각각 이관한다.

○ 그리고 현장성 강화를 위한 자격종목 통·폐합 및 신설방안도 마련했다.

- 산림기능장 등 13개 종목은 내년부터 폐지되며, 기계공정설계 기술사 등 57개 종목이 25개 종목으로 통합된다.

- 반면,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며 지난 30년의 성공적인 성과를 되돌아 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재도약 해야 하는 전환점에서있으며, 기능개편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것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붙임 자료〉

1.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훈련과정 개요
2. 사업주훈련 수행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3. 자격증 발급 서비스 제한 안내
4.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 안내
5. 자격검정 관리업무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훈련과정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자체 또는 위탁훈련 모두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훈련종류</th><th>지원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체훈련 (집합교육)</td><td>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비정규직은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액 추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2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td></tr> <tr> <td>현장훈련</td><td>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600시간 이내)×4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td></tr> <tr> <td>원격훈련</td><td> ① 우편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1인당 월 지원한도액 ·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과정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②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콘텐츠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td></tr> <tr> <td>유급휴가훈련</td><td> ①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은 집체훈련 규정 준용 ② 훈련생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액×훈련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150인 이상 기업이면서 대규모기업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 실시 ③ 대체인력채용지원 : 시간당 최저임금액×소정근로시간(150인 미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빈 일자리에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td></tr> </tbody> </table>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훈련종류	지원내용	집체훈련 (집합교육)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비정규직은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액 추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2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현장훈련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600시간 이내)×4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원격훈련	① 우편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1인당 월 지원한도액 ·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과정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②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콘텐츠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유급휴가훈련	①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은 집체훈련 규정 준용 ② 훈련생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액×훈련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150인 이상 기업이면서 대규모기업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 실시 ③ 대체인력채용지원 : 시간당 최저임금액×소정근로시간(150인 미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빈 일자리에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④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공단 지부, 지사장에게 신청 ■ 지원한도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은 100%)를 한도로 지원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를 한도로 하고 · 사업주가 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한도 금액까지 비용이 지원됨 ※양성훈련에 따른 지원금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인건비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포함)은 지원한도에서 제외
훈련종류	지원내용											
집체훈련 (집합교육)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비정규직은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액 추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2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현장훈련	①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600시간 이내)×40% ②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③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 식비 1일 3,000원 한도											
원격훈련	① 우편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1인당 월 지원한도액 ·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과정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②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콘텐츠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유급휴가훈련	①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은 집체훈련 규정 준용 ② 훈련생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액×훈련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150인 이상 기업이면서 대규모기업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 실시 ③ 대체인력채용지원 : 시간당 최저임금액×소정근로시간(150인 미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빈 일자리에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사업주훈련 수행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대표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국 어디서나 ☎ 1899-400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서초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강원도의 원주시·횡성군·춘천시·화천군· 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의 가평군	
강릉지사	강릉시	강원도의 영월군·정선군·평창군·태백시·삼척 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양양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경기도의 안산시·시흥시·안양시·과천시·의왕 시·군포시·광명시·수원시·화성시·용인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경기도의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성남지사	성남시	경기도의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 하남시·양평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북구·사상구·강서구·중구·동구· 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 제구, 경상남도의 김해시·밀양시·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 함양군·합천군·하동군·남해군·창원시·합 안군·의령군·창녕군·통영시·고성군·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울산광역시	

기 관	소재지	관할구역	대표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서구·달서구·북구·중구·동구· 남구·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의 고령군·성 주군·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군위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전국 어디서나 ☎ 1899-4001
경북지사	안동시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구미 시·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김천시	
포항지사	포항시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경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전라남도의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 ·고흥군	
목포지사	목포시	전라남도의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 ·진도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산군·공주시· 논산시·계룡시·연기군·논산시·계룡시	
충북지사	청주시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충청남도의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 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천안시·아산 시·예산군·당진군	

자격증 발급 서비스 제한 안내

2012. 1. 1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자격증에 종목별 주무부처 명기 등 서식 변경)으로 자격증 발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가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기 간
정상 발급	'11.12. 27 18:00 까지
신청 불가	'11. 12. 27 18:00~'12. 1. 4 09:00까지 단, '11.12.30 18:00까지 Q-net을 통한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발급과 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 여 자격증 현장 발급 가능
정상 발급	'12. 1. 4 09:00 부터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 안내

구 분	종 목 명			
신설 (4종목)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능사			
폐지 (13종목)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쇠석기운전기능사, 준 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자수 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통합 (57→25종목)	통합 전	통합 후	통합 전	통합 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기술사	전파통신,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사출금형, 프레스금형기능사	금형기능사	전파전자산업,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전파통신, 전파전자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조적산업,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방사, 염색가공, 섬유공정기술사	섬유기술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섬유물리, 섬유화학기사	섬유기사
	제관,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섬유물리산업, 섬유화학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양복(패턴), 양복기능사(봉제)	양복기능사
	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양장(패턴), 양장기능사(봉제)	양장기능사
	제강(전로), 제강(전기로), 제강기능사(연속주조)	제강기능사	광산보안(전기), 광산보안(채광),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
	위험물기능사(1류)~(6류)	위험물기능사	펄프제지, 목재가공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전기철도,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수산제조산업, 식품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시행기관 변경 (11종목)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7종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추기능사(4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상시검정 위탁시행 (12종목)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 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 제빵기능사			

자격증 관리업무 변경사항 안내

상시검정 시행종목(12종목)의 검정집행업무가 자격검정 노하우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12개 종목에 대한 자격증 관리업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탁기관	자격증 관리 변경	수탁종목
검정집행 업무 위탁협약	비영리 법인	1. '12. 1. 25일부터 해당 수탁기관 명의로 자격증 발행 2. '12.14~1.17 18:00까지 공단명의로 자격증 발행 ※ 2012 .1. 17 18:00 ~ 1. 25 09:00까지 자격증 인터넷 신청·발행 불가 단 1. 20까지 Q-net을 통한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과 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명의로 자격증 현장 발급 가능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 미용사(일반·피부)·한식 조리·일식조리·양식조리· 중식조리·제과·제빵기능사 (12종목)

※ 위 종목 자격취득자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12. 1. 17 18:00까지(인터넷·현장발급 가능), 2012.1.20 18:00까지(현장발급만 가능)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